

건설동향브리핑

제486호 (2014. 11. 17)

■ 경제 동향

- 9월 국내 건설 수주, 전년 동월 대비 36.8% 증가

■ 정책 · 경영

- 정부 부처별 유사 건설업종, 「건산법」으로 일원화 필요
- 건설 하도급, 「하도급법」 적용에서 제외해야

■ 정보 마당

- 오만 건설시장, 거점화 전략 기반의 진출 필요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입찰 담합 제재 실효성 확보하려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9월 국내 건설 수주, 전년 동월 대비 36.8% 증가

- 공공 부문 3.4% 증가, 민간 부문 53.3% 증가, 주택 수주 9월 실적으로는 7년 내 최대치 -

■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 모두 양호, 6개월 연속 증가세

- 2014년 9월, 국내 건설 수주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월 대비 36.8% 증가한 8조 3,066억원을 기록,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
 - 8조 3,066억원은 9월 실적으로는 지난 2009년 9월 이후 5년 내 최대치로, 예년보다 약 1조~2조원 정도 높은 금액임.

■ 공공 부문 : 토목 수주 호조로 3.4% 증가

- 공공 부문은 건축 수주가 부진하였지만, 토목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여 9월 실적으로는 3년 내 최대치인 2조 728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함.
 - 공공 토목 수주는 철도와 토지 조성 수주가 양호해 전년 동월 대비 34.4% 증가한 1조 5,548억원을 기록
 - 주택 수주는 9월 실적으로는 16년 내 최저치인 1,408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65.3% 감소함. 결국, 주택 수주는 지난 8월에 전년 동월 대비 383.0% 급등해 양호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임.
 - 한편, 비주택 건축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14.6% 감소한 3,772억원으로,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2014년 9월 건설 수주>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 대비 %)

구 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13. 9월	6,070.2	2,004.7	1,156.8	847.9	406.2	441.7	4,065.6	849.5	3,216.1	1,878.1	1,338.0
2014. 9월	8,306.6	2,072.8	1,554.8	518.0	140.8	377.2	6,233.8	485.0	5,748.8	3,756.3	1,992.4
증감률	36.8	3.4	34.4	-38.9	-65.3	-14.6	53.3	-42.9	78.8	100.0	48.9
2013. 1~9월	48,023.0	14,548.9	9,551.9	4,997.0	1,844.7	3,152.3	33,474.1	6,172.3	27,301.8	15,753.5	11,548.3
2014. 1~9월	62,125.4	17,807.3	11,725.3	6,082.1	2,410.1	3,672.0	44,318.1	4,196.7	40,121.3	26,006.1	14,115.2
증감률	29.4	22.4	22.8	21.7	30.6	16.5	32.4	-32.0	47.0	65.1	22.2

주 : 민간 수주는 국내 외국기관과 민자 수주액이 포함된 금액임.
 자료 : 통계청

■ 민간 부문 : 주택과 비주택 건축의 호조로 53.3% 증가

- 민간 부문은 건축 수주가 큰 호조를 보여 9월 실적으로는 7년 내 최대치인 6조 2,338억 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53.3% 증가함.
 - 토목 수주는 9월 실적으로는 8년 내 최저치인 4,850억원을 기록해 42.9% 감소함.
 - 주택 수주는 신규 주택뿐만 아니라 재건축 수주도 양호해 9월 실적으로는 7년 내 최대치인 3조 7,563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100.0% 급등함.
 - 한편, 비주택 건축 수주는 오피스와 공장 수주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48.9% 증가함.

■ 건축 : 주택·사무실·공장 양호, 토목 : 철도, 항만, 토지 조성, 기계 설치 양호

- 건축 수주의 경우, 관공서와 기타 건축을 제외하고 대부분 양호함.
 - 주택 수주는 공공이 부진하였지만, 민간의 호조세로 9월 실적으로는 7년 내 최대치인 3조 8,971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70.6% 증가함.
 - 사무실 및 점포와 공장 및 창고도 민간 수주의 증가로 각각 49.6%, 85.2% 증가
 - 한편, 관공서 수주와 기타 건축 수주는 각각 20.6%, 39.4% 감소해 부진
- 토목 공종의 경우, 도로 및 교량, 발전 및 송전 수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양호
 - 도로 및 교량과 발전 및 송전 수주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30.9%, 34.9% 감소해 부진
 - 반면, 철도 및 궤도 수주는 9월 실적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5,621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함.
 - 한편, 항만 및 공항 수주와 토지 조성 수주도 각각 68.3%, 38.0% 증가해 양호하였으며, 기계 설치 수주도 56.7% 증가해 양호한 모습을 보임.

<주요 세부 공종별 수주액 및 증감률>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 대비 %)

구분	건축					토목					
	주택	사무실 및 점포	공장 및 창고	관공서	기타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항만 및 공항	토지 조성	발전 및 송전	기계 설치
2014. 9월	3,897.1	1,264.1	678.5	348.2	78.8	207.1	562.1	174.6	339.6	347.2	131.9
증감률	70.6	49.6	85.2	-20.6	-39.4	-30.9	6.7	68.3	38.0	-34.9	56.7
2014.1~9월	28,416.2	9,585.8	3,616.5	3,103.2	1,481.6	4,386.5	3,036.2	762.1	1,752.1	2,070.2	1,863.4
증감률	61.5	62.1	11.0	-32.7	61.4	73.6	34.2	-12.5	15.8	-11.5	-54.7

자료 : 통계청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정부 부처별 유사 건설업종, 「건설법」으로 일원화 필요

- 업종 등록의 중복 규제 및 인위적인 입찰 참여 금지 등의 폐해 존재 -

- 건설 시공 관련 등록 체계를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건설업종으로 시공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별로 또다시 유사한 시공 업역을 신설하여 중복적으로 업역을 규제하는 사례가 존재
- 예를 들어, 환경부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근거하여 신설한 환경전문공사(구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이 있고, 물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물순환촉진이용법」), 자연환경복원설계사업(「자연환경보호법」 개정 추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지하수법」),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하수도법」),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가축분뇨관리이용법」) 등을 이미 신설했거나, 신설을 추진한 바 있음.
 - 또, 산림청의 소관으로 산림사업법인(「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과 노동고용부의 소관으로 석면해체·제거공사업(「산업안전기본법」) 등이 있음.

■ 유사 건설업종의 신설 배경에는 부처 이기주의 내재

- 개별 법에 의한 업종 신설은 또다른 행정 규제로서 작용하는데, 예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등록 기준만 충족하면 응찰이 가능했던 공사에 대해 새로운 개별 법령상의 업역을 추가로 등록하고, 관련 등록 기준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임.
 - 법적으로는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이 우선 적용(법 제4조)됨. 그러나, 2011년 이전에 개별 법령에서 특정하게 건설공사 시공에 관한 자격을 허용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개별 법령마다 등록 기준, 시공 관리, 하도급 규정, 벌칙 등의 조항이 상이하여 건설업종 간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존재
- 환경전문공사업이나 산림토목업, 석면제거공사업 등 유사 건설업종이 신설되는 배경에 대해 해당 업종 단체나 관련 부처에서는 전문적인 자격 규제의 필요성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기저에는 환경부나 산림청, 고용노동부 등의 부처 이기주의가 내재되어 있

다고 볼 수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업종별 업무 범위의 명확한 규정 필요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종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등에서 유사 건설공사업종을 신설하여 시공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요구됨.
 - 토목공사업의 경우, 산림토목, 임도, 치산치수사업 등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건설업종 가운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포함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하수재이용시설 등을 포함
 - 환경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사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하거나, ‘착정공사업’을 신설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 자격을 부여
 -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하거나, ‘청소공사업’을 신설하여 시공 자격을 부여
- 부처 간 이기주의에 의거하여 유사 건설업종의 신설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업역 분쟁에 따른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업종 가운데 업역 분쟁의 가능성이 높은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해당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요구됨.
 - 예를 들어, 산림토목공사의 시공 자격과 관련된 업역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토목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치산공사, 임도공사, 사망사업, 사태방지공사를 명시함이 필요
 - 조경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자연환경보전이나 훼손방지, 복원복구시설,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 옥상녹화 등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
- 일본의 「건설업법」에 규정된 건설업종의 업무 범위를 참조할 때, 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놀이 시설이나 무대장치, 도로방음벽공사, 입체주차장 설비공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함이 필요

최민수(연구위원 · mschoi@cerik.re.kr)

건설 하도급, 「하도급법」 적용에서 제외해야¹⁾

-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없어 -

- 하도급 거래는 본질적으로 계약이므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원칙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함. 그러나, 「하도급법」은 모든 하도급 거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Dominant Position)를 갖는다고 가정하고, 하도급 계약 내용을 규제하고 있음.

■ 우월적 지위의 개념

- 전통적인 의미의 우월적 지위는 독과점 시장 구조인 경우의 시장 지배력(Market Power)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시장 점유율(Market Share)을 중심으로 평가함.
- 최근 EU(European Union, 유럽 연합)와 일부 유럽 국가(독일·프랑스·스위스 등)는 시장 점유율이 낮을 경우, 우월적 지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경제적 의존성(Economic Dependence)의 개념을 도입하여 우월적 지위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음.
- 경제적 의존성은 쌍방 관계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존의 거래선과 다른 거래선이 존재하지 않거나, 대체 거래선으로 전환하는 비용(Switching Cost)이 클 경우에는 상대방에 의존한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거래 일방은 의존하는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를 가짐.
 - 특정 거래 상대방에게 맞춘 특화된 투자를 하는 경우, 자산 특화성(Asset Specificity)이 높아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고,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 비용이 높음.

■ 건설 하도급의 우월적 지위의 분석

- 첫째,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건설 하도급에서 하도급자(전문건설업자)는 다수의 원도급자(종합건설업체)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다수의 거래선이 존재하는 상황임.

1)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2014년 11월에 발간한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에서의 우월적 지위에 관한 고찰」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

- 둘째, 일반적으로 전문 공사는 특수한 시공 기술이 아닌 범용 시공 기술을 가지고 시공하는 시장임. 따라서, 건설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자의 거래 상대방에게 특화된 투자를 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임.
- 건설 하도급은 완전 경쟁시장에 가까운 시장이고, 일반적으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의 대체 거래선도 존재하고, 특정 원도급자(원사업자)에게 특화된 투자 가능성도 희박하여, 다른 대체선으로의 전환 비용도 크지 않아 원사업자(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건설 하도급은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운용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에 제외해야 함.
- 대부분의 국가는 「하도급법」이 아닌 공정 거래 관련 법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규제하고 있고, 「하청법」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건설 하도급은 「하청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음.

■ 기대 효과

- 건설 하도급을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의 기대 효과는 첫째, 하도급 규제로 상실할 수 있는 잉여 가치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적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음.
- 둘째, 건설 하도급 거래의 가격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경쟁력이 없는 하도급자(수급사업자)를 보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경제의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음.

<협력 업체로 등록된 종합건설업체 수>

협력 업체로 등록한 종합건설업체 수	전문건설업체 수
5개 사 미만	19,898개 사
5~10개 사	4,333개 사
10~30개 사	3,051개 사
30~50개 사	447개 사
50~100개 사	147개 사
100~300개 사	13개 사
300개 사 이상	2개 사

자료: 대한건설협회

이의섭(연구위원 · eslee@cerik.re.kr)

오만 건설시장, 거점화 전략 기반의 진출 필요

- 아프리카·유럽·아시아의 중간 위치인 지리적 장점 활용 바람직 -

■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자원 수출로 얻은 수익 바탕으로 산업 구조 다각화 정책 추진

- 2012년 기준, 석유가스 부문은 오만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의 52% 및 재정 수입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원유 생산량과 국제 가격의 변화에 따라 경제 성장이 좌우됨.
 - 산업 구조의 다각화를 위한 투자 확대 및 원유 수출 증가 등으로 4~5%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석유 의존적 경제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오만 정부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석유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탈피와 노동 생산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Vision for Oman's Economy 2020'을 수립
- 'Vision for Oman's Economy 2020'은 지난 1995년에 자원 고갈에 대비해 수립된 장기 경제 발전 계획임.
 - 4대 추진 전략은 △ 인력 자원의 개발과 오만인의 기능 역량 강화(Omanization), △ 민간 부문의 개발 확대를 위한 안정적 거시 경제의 구축(Macro-Economy), △ 경쟁력 있는 민간 부문의 장려, △ 경제 다변화의 실현을 위한 환경 제공 등임.
 - 특히, 오만 정부는 2014년 산업 구조의 다각화와 관련하여 비석유산업의 육성, 중소기업 진흥,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약 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

■ 산업구조 다각화를 위해 대규모 교통 인프라 투자 확대 지속

- 오만 건설시장은 주변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국가들에 비해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국가 경제 개발을 위해 도로·철도·공항 등 다수의 교통 인프라 발주가 지속되고 있음.
 - 2010년에 78.9억 달러의 발주 규모를 기록한 이후, 2011년에 66.6억 달러, 2012년에는 58.1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감소하였지만, 2013년에는 65억 달러로 반등
 - 오만의 교통 인프라는 주변 GCC 국가들에 비해 열악한 수준으로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도로와 공항 및 철도 등 교통 네트워크의 개선과 확장이 필요한 상황임.

<최근 7년 간 프로젝트 발주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6,216	7,433	6,463	7,894	6,668	5,812	6,500

주 : 2013년 금액은 추정치임.
 자료 : MEED(Middle East Economic Digest)에서 재인용.

- 제8차 경제 개발 계획(2011~15년) 하에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는 350억 달러 규모이며, 오만의 수도인 무스카트에 현재 건설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규모만 75억 달러에 달함.
- 2014년 추진 중인 도로 건설 프로젝트는 약 14억 달러 규모로, 교통 분야의 단일 공종으로는 카타르의 도로 프로젝트에 이어 두 번째 규모임.

<2014년 주요 도로 건설 프로젝트>

(단위 : 달러)

프로젝트 명	규모
Al-Batinah Express Way(4공구)	352,817,688
Al-Batinah Express Way(5공구)	344,863,459
Al-Batinah Express Way(6공구)	322,496,749
Mahdha / Al-Rawdh 구간 확장	163,459,038
Sinaw Mahout Al-Duqm(2공구)	119,885,191
Falaj Al-Qabail 교차로 교량 건설	46,513,402
교차로 설계 및 건설	14,304,291
Wadi Sal-Ras Al-Had Road	12,578,746
Wadi Mistily Road 확장 공사 감리	8,196,380
Mahdha - Al-Rawdha Road	2,210,663
Al-Rusayl - Nizwa 구간 확장	2,039,433
Camel Race Track	2,132,640

자료 : 외교부

■ 지역 거점화 전략 기반의 진출 필요

- 건설시장의 성장세 지속과 더불어 오만의 지리적인 장점 및 우호적 투자 환경을 감안할 때, 수주 대상으로서의 일차원적 전략을 넘어 지역 거점화 대상 국가로서 진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주 기회에 대응하는 전략과 동시에 아프리카, 인도, 유럽 및 아시아의 중간 위치인 오만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해 주변 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화 전략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내용
11. 12	경기도시공사	• '지금 지구 조성원가심의위원회'에 건설경제연구실 허윤경 연구위원 심의위원으로 참여
11. 14	한국시설안전공단	• '건강한 기반 시설 만들기 포럼 제2차 회의'에 건설관리연구실 이영환 연구위원 토론자로 참여

■ 「제20차 ASIACONSTRUCT Conference」 참여

- 연구원은 지난 11월 13~14일, 홍콩에서 개최된 'ASIACONSTRUCT Conference'에 참여. 이번 회의에는 건설산업연구실 빈재익 연구위원이 '한국 건설산업의 투입 구조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였음.
- ASIACONSTRUCT Conference는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14개 국가의 건설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국의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회의임. 연구원은 제1회 회의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통일시대 건설 분야 협력 방안 세미나」 참여

- 연구원은 11월 18일에 개최되는 '통일시대 건설 분야 협력 방안 세미나'에 참여하여 건설정책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이 '통일 인프라 구축과 자원 조달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임.

■ 「민자 사업 재무 모델 해석 및 응용 실무 과정」 교육생 모집

- 일정 : 2014. 12. 10(수)~11(목), 16시간
- 장소 : 건설회관 9층 건설산업연구원 연수실
- 대상 : 건설업체 민간투자사업 실무자, 유관기관 및 단체 등
- 참가비 : ₩370,000/인

※ 본 연구원은 노동부 지정 교육 기관임. 고용보험 납부 사업장의 재직자일 경우, 교육비의 일부가 환급됨(우선 지원 대상 기준, 30% 내외). 단, 대규모 기업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

- 문의 : 기업지원팀 교육 담당(Tel. 02-3441-0691, 0848)

입찰 담합 제재 실효성 확보하려면

담합이 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부당한 공동 행위와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적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며,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 체계가 갖춰져 있다. 건설산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건설공사 관련 입찰 담합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들 법률에서는 벌금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를 통해 최대 2년 이하의 시설공사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공정거래법」에 의거한 제재의 목적, 즉 담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환수 및 처벌을 받고도 「건설법」 및 「국가계약법」에 의한 추가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이는 결국 이중 제재이고 중복 제재인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중복 제재에 대하여 「건설법」과 「국가계약법」상의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제재가 그 법률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법률의 본연의 목적에서 보면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제재가 아니냐는 의견이 함께 제기될 수밖에 없다.

건설기업들은 과징금 처분 등에 대하여는 회계에 그대로 반영해 처분에 응하고 있지만, 입찰 참가 제한은 향후 영업 활동에 있어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앞다퉈 진행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향후 입찰 담합과 관련하여 제재를 받은 건설기업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거의 동시에 입찰 참가 제한 시점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건설시장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데 있다.

입찰 담합이 해당 산업과 국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공정 행위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가 부당하게 편취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환수와 처벌이 목적이라면, 과도하고 중복적인 제재보다 이러한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과도하고 중복적인 제재는 개선해야 하며, 담합이라는 경제적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은 경제적 제재로 일원화하는 것이 제재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제재의 목적에 부합하는 충분한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 제재의 실효성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특히, 입찰 담합의 내용과는 별개로 확일적으로 과징금 부과, 고발, 그리고 입찰 참가 제한 등이 이어지는 현행 법적 체계는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경제적 영향에 따른 제재 수단의 탄력적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건설경제, 2014. 10. 30>

김영덕(연구위원 · ydkim@cerik.re.kr)